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87
----------	-------

제출년월일 : 2014.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각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시간별로 규정된 수강료를 월 수강료 상한액으로 개정하여 강좌별 특성에 따라 수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강좌 개설을 통해 자치회관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강료 징수기준(세분화된 개별기준에서 상한액 기준으로 변경)

- ▶ 과목당 수강시간별 수강료 규정 → 월 수강료 상한액으로 규정
- ▶ 과목(강좌) 구분 이원화 → 과목(강좌) 구분 일원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2. 수강료 나. 개별기준				[별표 1] 2. 수강료 가. 징수기준			
구분	기준(과목당 1주당 수강시간)	수강료(월)	비고	구분	단위	수강료 (상한액)	비고
일반강좌 (취미, 교양 강좌 등)	2시간 이하	10,000원 이하	실습재료 비등은 본인 부담	강좌프로그램 (문화취미, 교양생활체육 등)	월 과목당	35,000원	실습재료비 등은 본인 부담
	3시간 이하	12,000원 이하					
	5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7시간 이하	18,000원 이하					
	9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10시간 이하	35,000원 이하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 등	5시간 미만	25,000원 이하					
	5시간 이상	35,000원 이하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4. 8. 28. ~ 9. 17. (제출된 의견 없음)
- 나.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제외대상
- 다.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권고사항 있음
 - 1)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2) 검토결과 : 동장의 사용료 결정대상이 모호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개정안 별표 1에 규정된 '시설명 : 다목적회의실'을 '삭제'하거나, 시설명을 '○○회의실, ○○실, ○○강당 등'과 같이 예시적으로 규정
 - 3) 조치사항 : 권고안 반영(별표 1의 제1호 중 시설명을 삭제)

구청장 방침	심의회 상정안
<p>[별표 1]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 (제10조제3항 관련)</p> <p>1. 사용료 가. 시설명 : 다목적회의실 나. 사용료 1)~ 2) 생략 다. 환급규정 : <이하 생략></p>	<p>[별표 1]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 (제10조제3항 관련)</p> <p>1. 사용료 <u><삭 제></u> 가. 사용료 1)~ 2) 생략 나. 환급규정 : <이하 생략></p>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4. 9. 23.)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자치회관(이하 “자치회관”이라 한다)”을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항의 제1호”를 “제1항의제1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함에 있어서”를 “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를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회의”로, “제10조제6항에 의한 “수강료” 징수액중”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의 징수액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자치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0조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수강료”를 “수강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협조·지원등”을 “협조·지원 등”으로, “관계자등”을 “관계자 등”으로, “구성·운영 할”을 “구성·운

영할”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구역내”를 “구역 내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활용 할”을 “활용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강료등”을 “수강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로서”를 “경우로써”로,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경우로써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범위에서,”를 “범위에서”로, “주민자치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주민자치위원회가”를 “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1조제3항에 의한”을 “제11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3항에 의한 사용료등”을 “사용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로, “2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를 “방법으로 주민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사용료””를 “사용료”로, “주민자치위원회는”을 “위원회는”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중”을 “위원회의 위원 중”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을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이용할 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할구역내”를 “관할구역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참여”를 “구청장 또는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참여”로,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를 “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10월말”을 “10월 31일”로, “주민자치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등”을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에 대하여”로, “주민자치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당해 반기 경과 후”를 “해당 반기 경과 후”로 한다.

제15조 중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의결로서”를 “의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제6호”를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고문”으로, “고문”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역내”를 “구역 내”로,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방법에 의하여”를 “방법으로”로, “선정된 자”를 “선정된 사람”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

제17조제2항제3호 중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를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를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는”으로,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를 “관내 주민 등 여러 계층이 균형있게”로, “1/3”을 각각 “3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아닌 자”를 “아닌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로서”를 “사람 중에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

은 조 제6항 중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를 “명단 및 임기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로, “방법에 의해 일반”을 “방법으로”로, “새로이”를 “새로”로,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을 “명단 및 임기 등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별도 고문”을 “위원 및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고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별도 고문”을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고문”으로,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원장으로”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로, “1회에 한하여 위원장을”을 “한 차례만”으로, “유고시”를 “유고 시”로, “전임자”를 “전임위원 임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주민자치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자치위원들”을 “위원회 위원들”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자치위원”을 “위원회 위원들”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기능등”을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해태 하였거나”를 “해태하였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월1회”를 “월 1회”로, “1/3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개최 할”을 “개최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 중 “회의시 마다”를 “회의 시”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을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제10조제3항 관련)

1. 사용료

가. 사용료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무료
- 2)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시간당 10,000원 이하
 - ※ 1시간 초과 이용마다 사용료의 50% 추가 부담. 단, 초과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나. 환급규정 : 제2호나목 환급규정을 준용한다.

2. 수강료

가. 징수기준

구분	단위	수강료(상한액)	비고
강좌프로그램 (문화·취미·교양·생활체육 등)	월 과목당	35,000원	실습재료비 등은 본인 부담

※ 수강료는 징수기준 상한금액 내에서 각 동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다.

나. 환급규정

구분	환급금액
자치회관의 귀책사유인 경우	전액
이용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 개시일 전일까지 : 전액 - 개시일부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잔액

※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 수강료의 환급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2]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10조제5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위 감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장 총 칙</p> <p>제4조(설치 등) ① (생 략)</p> <p>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000동 <u>자치회관</u>(이하 “자치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p> <p>제5조(기능) ①·② (생 략)</p> <p>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제1항의 제1호</u>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p> <p>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생 략)</p> <p>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u>주민자치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p> <p>③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u>정함에 있어서</u>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p>	<p>제1장 총칙</p> <p>제4조(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자치회관</u> ----- -----.</p> <p>제5조(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제1항의제1호</u>- ----- ----- -----.</p> <p>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 ----- -----.</p> <p>③ ----- <u>정할 때에</u> 는-- ----- ----- -----</p>

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조(운영) ① (생략)

②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의한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회의 -----
----- 위원회
의 -----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
----- 위원회의 -----

-----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의 징수액 중 -----
-----.

④ -----
----- 위원회의 -----

-----.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및 시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생략)

⑦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⑧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⑤ -----

----- 제10조에 따라 -----
-- 수강료-----

-----.

⑥ (현행과 같음)

⑦ ----- 협
조·지원 등-----

----- 관계자 등 -----
----- 구성·운영할-----.

⑧ ----- 구역 내
에 -----

-----.

제9조(강사) ① -----

----- 활용할-----.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 ① -----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등(이하 “사용료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한다.

④ (생략)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2와 같다.

⑥ 제2항에 의하여 주민자치위

----- 수강료 등 -----

-----.

② -----
----- 경우로써 -----
----- 경우로써 위원회 -----
-----.

③ -----
----- 별표 1 -----
범위에서 ----- 위원
회의 -----
----- 위원회가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1조제3항에 따
른 -----
----- 사
용료등 -----
-----.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 (생략)

②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2조(주민참여) ① (생략)

한 수강료는 위원회-----

----- 20일 이
내----- 방법으로
주민에게 -----.

⑦ ----- 사용료-----

----- 위원
회는-----
----- 위원회의 위
원 중-----

----- 위원회의-----.

제11조(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이용할 때-----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년도 자치회관의 연간운영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설치) 동의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각 동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000동 주민자치위

② 관할구역 내-----

-----.

③ 구청장 또는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참여-- 그-----
-- -----

-----.

제14조(보고) ① ----- 10월 31일-----
----- 위원회의----- --

--.

② -----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에 대하여 -----

----- 위원회의-----
----- 해당 반기 경과 후 -----
-----.

제15조(설치) -----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기능)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

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과 당연직 고문으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 동에 한하여 고문이 된다.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

제16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규정에도 -----

----- 의결로 -----
-----.

③ -----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

-----.

제17조(구성 등) ① -----

----- 고문-----

----- 당연직 고문-----.

② ----- 구역 내-----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복지시설, 통장 대표, 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3. 위원으로 사직이나 해촉된 자를 재위촉할 경우에는 사직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③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

----- 종사하는 사람 -----

----- 방법으로 -----
선정된 사람 -----

----- 사람을 -----
-----.

1. -----
----- 그 밖의 -----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

3. 위원회의 위원-----
----- 사람을 -----
-----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③ -----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는-----

----- 관내 주민 등 여러 계층이 균형있게

----- 3분의 1 -----

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별도 고문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 및 별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 3분의 1 -----
-----.

④ ----- 위원 중 -----
----- 아
닌 위원 -----.

⑤ -----

----- 사람 중에서 -----
----- 사람을
-----.

⑥ -----
----- 명단 및 임기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
방법으로 -----

----- 새로 ----- 명단 및
임기 등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
-----.

⑦ 위원 및 당연직 고문을 제외
한 고문 -----
-----.

1. ----- 당연직 고문을 제외
한 고문 -----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 중 위원장으로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원장을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유고시 새로 선출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제6항 및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게시 등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⑨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⑩ 구청장은 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교육과 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두 차례만 -----.

2.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 한 차례 만-----
----- 유고 시 -----
----- 전임위원 임기-----
-----.

⑧ ----- 제10조제6항에 따른 -----

-----.

⑨ ----- 위원회의-----
----- 위원회 위원들-----
-----.

⑩ ----- 위원회 위원들-----

-----.

제20조(해촉) ① -----

-----.

제6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3. (생략)
4.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생략)
6.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 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 ⑤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
기능 등-----

5. (현행과 같음)

6. -----
---- 해태하였거나 -----

② 제1항에 따른 -----

-----.

제21조(회의) ① -----

----- 월 1회 -----

----- 3분의 1 이상----- 개최할 -----.

② 제1항에 따른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실비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절차·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
(제10조제3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 가. 시설명 : 다목적회의실
- 나. 사용료 (생략)
- 다. 환급규정 (생략)

2. 수강료

가. 일반기준

(1) 수강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나"항의 개별기준의 범위안에서 각 동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신축성있게 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 회의시-----
-----.

제23조(실비보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

제24조(시행규칙 등) ----- 시행에-----

-----.

[별표 1]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
(제10조제3항 관련)

1. 사용료

- 가. 사용료 (현행과 같음)
- 나. 환급규정 (현행과 같음)

2. 수강료

가. 징수기준

구분	단위	수강료 (상한액)	비고
강좌프로그램 (문화·취미·교양·생활체육 등)	월 과목당	35,000원	실습재료비 등은 본인 부담

※ 수강료는 징수기준 상한금액 내에

(2) 수강료의 경우, 구분란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강좌)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과목(강좌)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동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3) 환급규정
(생략)

나. 개별기준

구분	기준 (과목당 1주당 수강시간)	수강료(월)	비고
일반강좌 (취미, 교양 강좌 등)	2시간 이하	10,000원 이하	실습재 료비등 은 본인 부담
	3시간 이하	12,000원 이하	
	5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7시간 이하	18,000원 이하	
	9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10시간 이하	35,000원 이하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 등	5시간 미만	25,000원 이하	
	5시간 이상	35,000원 이하	

[별표 2]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10조제5항 관련)

감면대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u>수급자</u> (소년·소녀가장)	전액 면제
(생략)	
(생략)	
(생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u>저소득의</u> 모자 또는 부자 가족	

※ 기타 상기내용에 규정되지 않는 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서 각 동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다.

나. 환급규정
(현행과 같음)

<삭제>

[별표 2]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10조제5항 관련)

감면대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u>수급자</u>	전액 면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u>한부모가족</u>	

※ 그 밖에 위 감면기준에 규정되지 않는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